

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의2] <개정 2021. 1. 5.>

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(제6조의2제1항 관련)

공무원의 종류	적 용 대 상
일반직공무원	6급 이하
별정직공무원	6급 상당 이하
교육공무원	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
연구직·지도직공무원	연구사·지도사
지방전문경력관	나군 및 다군

비고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.